

■ 법률 칼럼

부모 시민권 취득 시 18세 미만 자녀의 자동 시민권 취득

2001년 시민권법에 따르면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1년 시민권법 규정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시민권법은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시민권법은 18세라는 나이뿐만이 아니고 그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 되기 위한 상세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둘째,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가 현재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여건 3가지 요건 즉 1) 18세 미만 2) 영주권자 신분 3) 시민권 부모와의 동거 중 한 가지만 충족이 되지 않아도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7살의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그 17세 자녀는 시민권 취득 가능 연령인 18세가 되었을 때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 부모와의 동거 조항이 충족되지 않아 시민권 자동 부여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남은 이슈는 이 자녀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서류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함에 따라서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증가했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여권을 미국 국무성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서, 자녀와 그 부모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영주권 등을 국무성에 제출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 여권이면 충분하지만,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관학교 등에 지원하는 경우에 시민권 증서의 일련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명방법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N-600이라는 시민권 증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 데도 N-400라는 시민권 증서 신청이 아닌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Powder Canyon Trail - La Habra Heights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완만한 코스다. 위험하지 않은 코스이지만 가끔 코요테나 여우 등을 만날 수도 있다. 필자는 지난해 12월 9일(일) 오후 1시경 이 코스를 걷다가 여우를 만났다. 아니 여우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 숲속으로 쩍싸게 몸을 숨기는 바람에 편안히 지날 수 있었다. 사람이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 한 위험하지 않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반겨준다. 봄철에 가면 그 야말로 형형색색의 들꽃들을 즐길 수 있다. 개와 함께 걸을 수도 있고 승마를 즐길 수도 있다. 위험하지 않으나 중간에 트레일들이 많이 있어 이정표를 잘 확인하고 걸어야 한다. 곳곳에 안내 표시판이 잘 설치되어 있으므로 길을 잃을 염려는 없으나 설사 잘못 들어섰다면 해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승마를 원하면 트레일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Schabarum Park의 승마장 사무실에 문의하기 바란다-

Schabarum park까지 갔다가 되돌아 오는데 약 4 마일로 1시간 30여분에서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2시간 정도 걸린다. 만일 이 코스가 짧다고 느껴지면 얼마든지 더 걸을 수 있다.

숲길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땀병에 몸을 노출하고 걸어야 한다. 반드시

시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햇빛 차단제를 바를 것을 권한다.

■ 가는 길: LA에서 60번 동쪽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Fullerton Road에서 내려 우회전 한다. Fullerton Road로 2마일 가량 진행하면 Pathfinder Rd.를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작은 길이 나온다. 오른쪽 작은 길이 Fullerton Road이다. 차를 타고 오면 큰 길은 N. Harbor Blvd.로 길 이름이 바뀐다. 그 작은 길로 0.2마일 들어와 두 번째 비포장도로를 만나면 그리로 들어간다. 첫 번째 만나는 작은 주차장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면 큰 주차장을 만난다. 이곳이 트레일 헤드이다. 주차료는 없으나 공원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자동차를 Fullerton Road에 주차하고 트레일 헤드까지 걸어갈 것을 권한다. 공원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비포장이며 비가 온 뒤에는 웅덩이 물이 고여 있어 자동차가 더럽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차장까지 자동차를 타고 들어갔다 웅덩이를 지나면서 자동차에 손상을 입혀 약간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Harbor Blvd.를 타고 북상하다가 Pathfinder Rd.에서 유턴해서 조금 올라가 Fullerton Rd.를 만나 우회전하면 된다.



▲ Powder Canyon Trail, 사진=타운뉴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Home Remodeling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